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5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차규근・이해민・조 국

신장식 · 김준형 · 서왕진

김재원 • 박은정 • 정춘생

황운하 · 김선민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 의6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6을 삭제한다.

제102조의7제3항제2호 중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를 "제97조"로 한다.

제103조의13제4항 중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을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나목 중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 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 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 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 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 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 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야 한다.

-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및 감면세액
- 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생 략)
 -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 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u>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

세102소의7(과세표군 왁성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현행과 같음)
2. <u>제97조</u>

02조의8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3. • 4. (생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 ③ (생 략)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 장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장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 ⑥ (생 략)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 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
액 등의 통보) ①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 1 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 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생략)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 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u>매매</u>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생 략)

2. ~ 5. (생략)

② ~ ④ (생 략)

1
가. (현행과 같음)
나
الد. الد.
<u>प्र</u> ाप
<u> 차익예정신고</u>
 다. (현행과 같음)
다. (연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2.